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협약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총괄기관” 이라 함)과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이하 “지원사업장” 이라 함), 지원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총괄기관” 과 “지원사업장” , “수행기관” 의 상호 협조 및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과 임무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내 용) “수행기관” 은 “지원사업장” 에게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한다.

제 3 조 (역할 및 책임) “지원사업장” 및 “수행기관” 은 컨설팅 수행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총괄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장” 은 “총괄기관” 과 “수행기관” 이 요청하는 컨설팅 관련 자료제공 및 전직원 설문조사 등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제 4 조 (기 간) 본 컨설팅은 서명일로부터 컨설팅 분야별 기준에 따라 8주~21주간 지원한다. “수행기관” 은 컨설팅 완료일로부터 3개월간 1회 이상 “지원사업장” 을 방문하여 이행관리를 시행하며, 이행관리가 종료되면 “지원사업장” 으로부터 ‘이행실적 확인서’ 를 받아 이행결과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 용) 본 컨설팅의 비용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 지원사업장의 경우 단일 분야는 240만원(2개 분야 450만원, 3개 분야 630만원)을 자부담 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기관”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부담금은 “수행기관” 의 수익으로 사용하되,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청렴실천) 본 컨설팅을 시행하는 “수행기관” 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됨을 깊이 인식하여 상호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제 7 조 (보 안) 본 협약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사업장 정보, 컨설팅 내용 등 관련 정보는 상호 보안을 유지한다.

제 8 조 (상호 협조) 본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도 “수행기관” 과 “지원사업장” 은 일터혁신 컨설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기관” 에서 컨설팅 관련 홍보, 성과조사, 사례전파를 위한 사업장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 및 “지원사업장”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유권 및 판권) 컨설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판권은 “총괄기관” 이 가지며, 컨설팅 사례 발표 및 제공 등 활용에 있어서는 “총괄기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총괄기관” , “지원사업장” , “수행기관” 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2018년 4월 30일

총괄기관	지원사업장	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이정식 [인]	대표 남기철 [인]	회장 박영기 [인]